

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입니다

■ 자동차세 연납제도란?

-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

■ 신고납부 기간 : '21. 1. 16. ~ 2. 1.

※ '20년 1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별도 신고 필요없음

■ 신고납부 기간별 공제율

신고·납부기간	공제율	공제대상기간	계 산 식
1월(1.16~1.31)	연세액의 9.1%	2월~12월	연세액 × 334/365 × 10%
3월(3.16~3.31)	" 7.5%	4월~12월	연세액 × 275/365 × 10%
6월(6.16~6.30)	" 5.0%	7월~12월	연세액 × 184/365 × 10%
9월(9.16~9.30)	2기분세액의 5.0%	10월~12월	2기분세액 × 92/184 × 10%

※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지방교육세(자동차세액의 30%)가 함께 부과됩니다.

■ 신청방법

- 자동차등록지 구·군(세무부서) 방문 또는 전화신청
- 위택스(<http://www.wetax.go.kr>)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(<http://etax.daegu.go.kr>) 전자신고

☞ 구·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문의처

중 구 (053) 661-2401
남 구 (053) 664-2401
달서구 (053) 667-2401

동 구 (053) 662-2405
북 구 (053) 665-2401
달성군 (053) 668-2403

서 구 (053) 663-2401
수성구 (053) 666-2401



대구광역시
DAEGU METROPOLITAN CITY